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51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손 술 · 전종덕 · 윤종오
정혜경 · 김승원 · 최혁진
서미화 · 서영교 · 이주희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이에 수사와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함. 보완수사권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수사권으로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기관에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권한 집중과 남용의 통로를 여는 것이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

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의 방치, 사건처리의 지연, 피해자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되므로,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문서주의, 법정 이행기한, 이행관리 의무, 긴급 보완수사요구, 수사관서 지정 등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비권력적 사실확인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수사권이 사실상 일원화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인권보호관·수사심의위원회 등 중층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을 새로 만들어 수사 및 공판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공소청에 집중되는 기소권 자체의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실효적으로 보완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현행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원칙과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대통령령과 부령 등에 산재하여 있던 수사의 기본원칙, 즉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불구속수사의 원칙, 비례원칙,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 별건수사 및 자백·진술 강요의 금지,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반복적 출석요구의 금지, 심야·장시간 조사의 제한, 출국금지 남용의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함(안 제198조제2항).

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비권력적·임의적 활동을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소 전 사실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신청 기반성·임의성과 결과물의 증거 사용 금지라는 한계를 명시함(안 제196조, 안 제197조의3제6항).

라. 보완수사요구는 그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행기한을 법정화 함과 동시에 통제된 연장 절차를 두고, 공소시효 임박·증거 멸실 위험 등에 대응하는 긴급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신설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한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의 지정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규정함(안 제197조의2).

마.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와 진행상황 확인

신청권을 부여하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함(안 제197조의3).

바. 수사기관 간 수사의 경합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수사권관할 조정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에의 통보·이첩 의무를 신설함(안 제197조의4 및 제197조의5).

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주요 증거의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재수사요청에 관하여 90일의 요청기한과 서면주의, 3개월의 이행기한, 재요청과 불이행 시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 또는 직근 상급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의6부터 제245조의8까지).

아.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로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여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상시화함(안 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

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여 피해자·고소인·고발

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주기적 통지의무, 피해자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 지연·수사미진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의제기권,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 검사의 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를 신설하여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안 제337조의2부터 제337조의6까지).

차.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권,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참여와 의견진술, 구속 전 피의자신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및 국선변호사 선정의 근거를 일반 규정으로 신설함(안 제337조의7부터 제337조의10까지).

카.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함(안 제246조의2).

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처리기한을 명문화함(안 제257조제1항).

파.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를 고소인 외에 고발인과 피해자로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90일로 연장하며, 국선변호사의 선정, 신청인·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기록 열람·등사, 기각 결정 시 구체적 판단이유의 명시를 규정하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60조부터 안 제262조의5까지,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5).

- 하.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성폭력범죄등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고 신문사항의 사전 제출·검토 절차를 규정함(안 제337조의8).
- 거.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실질화하고, 성폭력범죄등 사건의 심리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사생활에 관한 신문을 제한하며 신문사항의 사전 제출·검토 특례를 신설함(안 제337조의11, 안 제337조의12, 제337조의19 및 제337조의20).
- 너. 살인·상해·성폭력·강도 등 중대범죄의 피해자등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가하여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 증거신청, 공판기일 출석, 증인신문·피고인신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제도를 신설하고, 증거조사의 순서·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37조의13부터 제337조의19까지).
- 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해자의 피해 결과·회복 여부·처벌불원의사·양형 의견 등을 포함한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96조의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의 제목 “(法定期間의 연장)”을 “(법정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의”를 “교통통신의”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자의 신변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때

제71조의2 전단 중 “경찰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拘束令狀의 執行)”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83조의 제목 “(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을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は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을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을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囑託)”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高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搜查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으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令狀의 執行)”을 “(영장의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但, 必要한 境遇에
는 裁判長은”을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으로, “執行을 命”을
“집행을 명”으로 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제137조의 제목 “(拘束令狀執行과 搜索)”을 “(구속영장집행과 수색)”으
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
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
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
人の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
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
은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 “搜索에 準用한다”를 “수색에 준
용한다”로 한다.

제151조제4항 중 “경찰서유치장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
로 한다.

제19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과 방법

제195조의 제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5조의2(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기소 전 사실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된 자료, 판결문, 전문 학술자료 등의 검색·확인·검토
2.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등 소송조건에 관한 서면 또는 진술의 접수·확인
3. 사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령
4. 제337조의5에 따른 면담에서의 진술 청취

② 제1항의 행위는 사건관계인의 신청 또는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제1항의 행위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 및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위한 내부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1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에게”를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증거가 멸실·훼손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⑥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요구를 적정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⑦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

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수사처 검사”라 한다)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

제197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으로, “사실의”를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를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로,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을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로,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

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의자 또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피의자 :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2. 고소인·고발인·피해자 : 수사를 개시할 때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여부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 및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검사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신속하게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수사 또는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4제1항 중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

게 된”을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을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조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의 절차 및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제198조의 제목 “(준수사항)”을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6.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7.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8.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급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8조의2의 제목 “(檢事の 逮捕・拘束場所監察)”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로, “每月 1回 以上 管下搜查官署의 被疑者の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를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점검하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監察하는 檢事は 逮捕 또는 拘束된 者を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를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が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は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を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を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을 “사건”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住居”를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0조의3의 제목 “(緊急逮捕)”를 “(긴급체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が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으로, “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으로, “令狀없이 被疑者を 逮捕”를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 “긴급”으로, “被疑者”를 “피의자”로, “逮捕令狀”을 “체포영장”으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로, “檢事の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를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로, “緊急逮捕書를 作成”을 “긴급체포서를 작성”으로 한다.

제200조의4의 제목 “(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을 “(긴급체포와 영장 청구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は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를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 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6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을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를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로, “準用”을 “준용”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보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201조의 제목 “(拘束)”을 “(구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檢事が 第1項의 請求”를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に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검사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다른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 및 제203조”를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로 한다.

제203조의 제목 “(檢事の 拘束期間)”을 “(검사의 구속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が 被疑者を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の 引致를”을 “검사가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内に 公訴를 提起”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로, “釋放”을 “석방”으로 한다.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3조의2(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구속기간) ①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속기간 연장을 제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3(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제203조 또는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5조의 제목 “(拘束期間의 延長)”을 “(구속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地方法院判事は 檢事の 申請에 依하여 搜查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을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으로,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를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을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로 한다.

제208조의 제목 “(再拘束의 制限)”을 “(재구속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は 다른 重要な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을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

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으로 한다.

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210조를 삭제한다.

제213조의 제목 “(逮捕된 現行犯人の 引渡)”를 “(체포된 現行범인의 인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が 現行犯人を 逮捕”를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現行범인을 체포”로, “即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로 한다.

제213조의2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を 逮捕하거나 現行犯人を 引渡”를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現行범인을 체포하거나 現行범인을 인도”로, “準用”을 “준용”으로 한다.

제214조의2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3조 및”을 “제203조 · 제203조의2 및”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6조의 제목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強制處分)”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를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7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청구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청구는”을 “신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발부받지”를 “검사가 발부받지”로 한다.

제218조의 제목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の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로 한다.

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휘를 받아야”를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

제219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을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를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1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보고 제486조 제1항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21조의2의 제목 “(證人訊問의 請求)”를 “(증인신문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查”를 “범죄의 수사”로, “事實”을 “사실”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は 第1回 公判期日 前に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를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로 한다.

제221조의3의 제목 “(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를 “(감정의 위촉과 감정 유치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は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를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로 한다.

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22조의 제목 “(變死者의 檢視)”를 “(변사자의 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が 檢視”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로 한다.

제237조의 제목 “告訴, 告發의 方式”을 “고소, 고발의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을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으로 한다.

제238조의 제목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를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를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로 한다.

제241조의 제목 “(被疑者訊問)”을 “(피의자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로 한다.

다.

제242조의 제목 “(被疑者訊問事項)”을 “(피의자신문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로 한다.

제243조의 제목 “(被疑者訊問과 參與者)”를 “(피의자신문과 참여자)”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が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로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 중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통지에 주요 증거의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5조의8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요청 사실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요청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은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수사한 수사기관과 다른 수사기관 또는 직근 상급 수사기관(경찰관서의 경우 직근 상급 경찰관서를 말한다)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수사의 관할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종전에 수사한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고, 제245조의5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⑥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또는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245조의9를 삭제한다.

제245조의10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④ 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11(수사처검사 등에 관한 준용) ①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8조의2, 제200조의3제2항, 제202조, 제205조, 제221조의5 및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처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수

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며, 이 경우 검사에 대한 신청·통보·협의 및 검사의 청구·승인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편 제1장에 제2절(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수사심의

제245조의12(수사인권보호관)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에서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이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한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민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13(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6조의 제목 “(他管送致)”를 “(타관송치)”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를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로 한다.

제2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을 통지한 검사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45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을 “90”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재정신청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정신청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고등법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62조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법원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증거로 사용한 서류 및 증거물의 목록을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2조의5(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 ① 법원이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호사(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본다.

③ 지정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등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행사한다.

④ 지정변호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정변호사의 자격, 지정 절차, 보수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조사한다”를 “조사하고, 그 후 제337조의13에 따

른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로 한다.

제292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피고인·변호인 또는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으로 한다.

제292조의2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피고인·변호인 또는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으로 한다.

제294조의2부터 제29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6조의3(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 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피해자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힌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범죄

③ 제1항·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판결전조사 결과 중 피해자등에 관한 사항은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2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등(제337조의8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평판,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문 또는 진술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를 “수사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3항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337조의 제목 “(刑의 消滅의 裁判)”을 “(형의 소멸의 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第81條 또는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을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있는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으로 한다.

제2편에 제4장(제337조의2부터 제337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제337조의2(수사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사를 개시한 날
2.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사기록에 남겨야 한다.

1. 피해자등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통지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 조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통지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피해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7조의3(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① 피해자등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해자등과 관련된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7조의4(수사 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피해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고소·피해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헌법 및 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대한 조사, 멸실·훼손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증거에 대한 압수 등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경우
4. 제337조의2에 따른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담당자의 변경 또는 수사부서의 재지정
2. 사건처리 목표기한 및 수사 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③ 제1항의 이의제기는 수사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급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급기관의 장은 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심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37조의5(검사에 대한 면담 신청) 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또는 피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다.

1.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려는 경우
2.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또는 변론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려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검사는 이 조에 따른 면담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

④ 면담의 신청·실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령으로 정한다.

제337조의6(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① 피해자등은 사건을 송치받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7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등) ① 피해자등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는 수사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통지는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연령, 장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⑥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선정과 참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7조의8(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폭력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준비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3. 그 밖에 재판장이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판장은 제1항의 공판준비기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변호사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공판준비기일 전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문사항에 관하여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신문사항·신문방법·신문순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7조의9(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법원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5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 및 제5항·제6항에 따라 청구한 피해자등의 의견 중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7조의10(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7조의11(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337조의9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 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불허하거나 일시 유보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 유보하는 결정의 서면에는 그 유보 기간과 재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337조의1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서류·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337조의9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7조의13(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

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참가가 허가된 피해자등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이 법에서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살인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및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등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등의 주소지,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해자측참가인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 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 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37조의9 제3항·제4항 및 제337조의10을 각각 준용한다.

⑤ 법원은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337조의14(피해자측참가인의 검사 보관 서류등 열람·등사 신청) 제266조의3, 제266조의4 및 제266조의16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37조의15(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신청)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6조는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7조의16(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측참가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리 상황, 피해자측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측참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측참가인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 측에 위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마주보고 위치한다.

제337조의17(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신문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이외의 사항을 신문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⑤ 제16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7조의18(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7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37조의19(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에 한정하거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2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이 이

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사에게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 참가인에게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의견진술의 요지 이외의 사항을 진술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337조의20(성폭력범죄등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항 및 답변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때

2. 피해자의 성적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에 대한 증거조사 및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피해자는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37조의21(피해자등의 기피신청권) 피해자등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1조의2제3항 중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は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 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을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으로 한다.

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の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の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

제428조의 제목 “(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을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は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를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로 한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460조의 제목 “(執行指揮)”를 “(집행지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但, 裁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를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의 제목 “(死刑執行의 參與)”를 “(사형집행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468조의 제목 “(死刑執行調書)”를 “(사형집행조서)”로 하고, 같은 조

중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を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로 한다.

제470조의 제목 “(自由刑執行의 停止)”를 “(자유형집행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が 前項의 指揮”를 “검사가 제1항의 지휘”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77조제5항 전단 중 “조사”를 “조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

용한다”를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 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 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u> <u>청</u>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등사) ① ----- ----- ----- ----- <u>공소청</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 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u> <u>청</u>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 ----- ----- ----- <u>공소</u> <u>청</u>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第62條(檢事に 對한 送達) 檢事に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 廳에 送付하여야 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공소 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67條(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 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 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
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생 략)

1.~3. (생 략)

4. <신 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
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
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
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
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第8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
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① 檢
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또는 公소청 소재지-----

---교통통신의-----

--대법원규칙-----

-----.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현행
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피해자의 신변과 생명에 위
협이 되는 때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

-----.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
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
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
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
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
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② 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 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高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查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第115條(令狀의 執行) ① 押收・搜索令狀은 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② (생략)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

에서 當해 管轄구역의 사법경찰관에게 拘속영장의 집행을 촉탁-----.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管轄구역 外에서 拘속영장을 집행하거나 當해 管轄구역의 사법경찰관에게 집행을 촉탁-----.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對한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分明하지-----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소재의 확인과 拘속영장의 집행을 촉탁-----.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檢사의 촉탁에 依하여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집행을 명-----.

② (현행과 같음)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제81조제2항

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索에 準用한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 ⑧ (생략) <신 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에 따른-----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수색에 준용한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과 방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
---	--

계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5조의2(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6조(기소 전 사실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된 자료, 판결문, 전문 학술자료 등의 검색·확인·검토
2.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등 소송조건에 관한 서면 또는 진술의 접수·확인
3. 사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령
4. 제337조의5에 따른 면담에서의 진술 청취

② 제1항의 행위는 사건관계인의 신청 또는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를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2.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제1항의 행위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공소제기여부의 판단 및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위한 내부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 이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지체 없이-----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증거가 멸실·훼손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

<신 설>

<신 설>

<신 설>

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⑥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요구를 적정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⑦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수사처 검사”라 한다)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답 신설>

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
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
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이 경우 검
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범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
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
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의

<신 설>

<신 설>

자 또는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피의자 :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2.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수사를 개시할 때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여부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 및 그 처리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검사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신속하게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수사 또는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명

<신 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신 설>

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조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 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의 절차 및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제198조(준수사항) ① (생략)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제198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행위와 같음)

②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6.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7.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8.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
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
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第198條의2(檢事の 逮捕・拘束場
所監察) ①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
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
事로 하여금 每月 1回 以上 管
下搜查官署의 被疑者의 逮捕・
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한다. 監察하는 檢事は 逮捕 또
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
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 檢事は 適法한 節次에 의하
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
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
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④ 각급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
료되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
어졌을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
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
여야 한다.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
소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
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
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
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
를 조사하여야-----.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
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
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

命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
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
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
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
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
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の 逮捕
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
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
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
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
경찰관은-----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사법경찰관은 검사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
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다액 5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사건-----피의
자-----주거-----
-----제200
조에 따른-----
-----.

② ~ ⑤ (생략)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2. (생략)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の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지방법
원판사의 체포영장-----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 -----긴급-----
-----피의자-----
-----체포영장-----
---시간적-----
-----.

1. 2.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서를 작성-----
--.

④ (생 략)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는 석방일부터-----

-----.

1. ~ 4. (생략) ⑤ (생략)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200條의6(準用規定) 제75조,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u>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u>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통보</u>-----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u>사법경찰관</u>----- ----- ----- ----- -----.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 ----- -----<u>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u> -----<u>준용</u>-----.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보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	--

第201條(拘束) ① 被疑者が 罪を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
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は 管轄地方
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
狀을 받아 被疑者を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
地方法院判事の 拘束令狀을 받
아 被疑者を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
罪에 關하여는 被疑者が 一定
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 ④ (생략)

⑤ 檢事が 第1項의 請求를 함
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
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
경찰관리”로 본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理由가 있고 제70조제1항
各 호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수처법
에 따른 수사처검사 및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특별검사(이하 “특
별검사”라 한다)는 관할지방법
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
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
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
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
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
검사가 제1항의 청구-----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
여----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u>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u> <u>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u> <u>및 理由를 記載</u>하여야 한다.	<u>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u> <u>사실이</u>-----<u>구속</u> <u>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u> <u>를 기재</u>-----.
<u><신 설></u>	⑥ 제5항은 <u>사법경찰관이 제1</u> <u>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u> <u>한다.</u>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의자 심문) ① ~ ⑥ (생략)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 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 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u>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u> <u>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u> <u>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u> <u>를 산입하지 아니한다.</u> ⑧ ~ ⑩ (생략)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의자 심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공</u> <u>소청</u>----- --<u>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u> <u>2</u>----- -----. ⑧ ~ ⑩ (현행과 같음)
第203條(<u>檢事の 拘束期間</u>) <u>檢事が</u> <u>被疑者を 拘束한 때 또는 司法</u> <u>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の 引致</u> <u>를 받은 때에는 10日以内に 公</u> <u>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u> <u>하여야 한다.</u> 第203條의2(<u>拘束其間에의 算入</u>)	제203조(<u>검사의 구속기간</u>) <u>검사가</u> <u>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로</u> <u>부터 피의자의 인치를</u>----- -----<u>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u> -----<u>석방</u>----- -. 제203조의2(<u>수사처검사·특별검</u>

被疑者が 第200條의2・第200條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02條 또는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を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 起算한다.

<신 설>

사의 구속기간) ①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속기간 연장을 제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3조의3(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제203조 또는 제203조의2의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 地方法院判事は 檢事の 申請에 依하여 搜查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は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② (생략)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

②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

② (현행과 같음)

제209조(준용규정) -----

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후단 신설>

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 外의 搜查)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查하거나 管轄區域 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 받아 搜查할 때에는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 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查를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の 引渡)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에는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사
법경찰관의-----
----- . 이 경우 제81조
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
경찰관리”로 본다.

<삭 제>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즉
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
-----.

② (생 략) 第213條의2(準用規定)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u>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u>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생 략)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 ⑫ (생 략)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u>검찰청에</u>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 <u>제203조 및 제205조를</u> 적용	② (현행과 같음) 第213條의2(準用規定) ----- ----- -----<u>규정은 사</u> <u>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u> <u>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u>----- -----<u>준용</u>-----.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법경찰관은</u>----- ----- ----- ----- ----- -----. ③ ~ ⑫ (현행과 같음) ⑬ ----- ----- --<u>공소청</u>----- ----- ----- ----- ----- --<u>제203조 · 제203조의2 및</u>-----
--	---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 (생략)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
--.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員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생략)

-----.

② 사법경찰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신청은-----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청구한-----
--검사가 발부받지-----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 第118조부터 第132조까지, 第134조, 第135조,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후단 신설> 但, 사법경찰관이 第130조, 第132조 및 第134조에 따른 處分을 함에는 檢事の 指揮를 받아야 한다.

② -----

-----공
소청-----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의견을 들어야-----.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1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

	<u>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보고 제486조제1항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단서 삭제></u>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u>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u>사법경찰관은</u> ----- ----- ----- ----- -----.
②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u>	② <u>사법경찰관은</u> ----- ----- -----.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u>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 ----- <u>사법경찰관이</u> ----- ----- -----.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u>범죄의 搜查에 없어서는 아니 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は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u>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u>범죄의 수사</u> ----- -- <u>사실</u> ----- <u>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u>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 留置의 請求)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중인신문을 청구-----.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 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

②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

② -----
-----광역공소청-----

--.

③ -----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 ⑤ (생 략)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變死
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
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
視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
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
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하여
야 한다.

第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
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
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
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
다.

第241條(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광
역공소청장-----.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
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
가 검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
-----.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
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
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
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
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
야 한다.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
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
會를 주어야 한다.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
事が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
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
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
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
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
거와 職業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
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을 신문하여야 하며 이익이 되
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
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
게-----.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사법경찰관은-----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

② -----

-----.
-----사법경찰관이-----
-----.

③ -----
-----.

-----사법경찰관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법경찰관은-----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사법경찰관은-----

-----.

1. ~ 4.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경찰관이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
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
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
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と 對質하게 할 수 있
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
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
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
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
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
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
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
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
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
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

-----.

1.·2. (현행과 같음)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

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
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
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
질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
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
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
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
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
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
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
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
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

<삭 제>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법경찰관은 그 통지에 주요 증거의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
----사람은-----

-----.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
-----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

----- . 이
경우 그 요청 사실을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
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
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요청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
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 설>

<신 설>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
청은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
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
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수사
한 수사기관과 다른 수사기관
또는 직근 상급 수사기관(경찰
관서의 경우 직근 상급 경찰관
서를 말한다)에 재수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수사의
관할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
용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
하는 경우

2. 종전에 수사한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신 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고, 제245조의5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신 설>

⑥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또는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삭 제>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생 략)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생 략)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
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
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
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
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협력을 요
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45조의11(수사처검사 등에 관
한 준용) ①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
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97조의2, 제
197조의3, 제198조의2, 제200조
의3제2항, 제202조, 제205조, 제
221조의5 및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준용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처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

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며, 이 경우 검사에 대한 신청·통보·협의 및 검사의 청구·승인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수사심의

<신 설>

제245조의12(수사인권보호관)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에서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이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

<신 설>

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한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민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13(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

<신 설>

第256條(他管送致) 檢事は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第257條(告訴等에 의한 事件의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查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内に 搜查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258條(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①・② (생략)
③ <신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258條(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을 통지한 검사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45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검사로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공소청법」-----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90-----
-----지방공소청장-----

-----.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정신청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정신청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지방공소청장-----

-----지방법원-----

에-----.

-----지방공소-----

청장-----

-----.

1. -----

-----지방-----

법원-----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생략)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2. -----

----지방법원-----.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공소청장-----

-----.

⑥ -----

지방공소청장-----

-----.

⑦ 법원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열람·등사 제한) -----

다만,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증거로 사용한 서류 및 증거물의 목록을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62조의5(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 ① 법원이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호사(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본다.

③ 지정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u>관하여 검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등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행사한다.</u> <u>④ 지정변호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u> <u>⑤ 지정변호사의 자격, 지정 절차, 보수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u>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u>조사한다.</u>	----- ----- -----<u>조사하고, 그 후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 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u>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u>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 <u>피고인 · 변호인 또는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u>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 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事件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

자측참가인-----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 방식) ① -----피고인·변호인 또는 제337조의13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들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자들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
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
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
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
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
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
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
로 본다.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
개)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
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
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
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삭 제>

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삭 제>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
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
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
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
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
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
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
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
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

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
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
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
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
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
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
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
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
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
매·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
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
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
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

<삭 제>

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
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
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
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
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
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
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
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
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6조의3(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 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피해자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를 입힌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범죄

③ 제1항·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판결 전조사 결과 중 피해자등에 관한 사항은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에 관하여

第299條(不必要한 辯論等の 制限)
(생 략)

<신 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
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
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
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
을 수 있다.

第299條(不必要한 辯論等の 制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등(제3
37조의8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
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
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
해자의 성적 이력, 평판, 사생
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문 또는 진술을 제한하
여야 한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기관이-----

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

-----.

④ 사법경찰관이-----

-----사법
경찰관-----

-----.

⑤ 제3항 및-----

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
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
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
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
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第337條(刑의 消滅의 裁判) ①

「형법」 第81條 또는 同 第82
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
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신 설>

<신 설>

-----.

⑥ 사법경찰관이-----

-----.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
어있는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
원에 신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
리

제337조의2(수사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고소
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사를 개시한 날

2.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
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사기
록에 남겨야 한다.

1. 피해자등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통지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
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
조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피
해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통지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피
해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7조의3(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① 피해자등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해자등과 관련된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7조의4(수사 지연 등에 대한이의제기) ① 피해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고소·피해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피해자등의 헌법 및 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수사기관이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 멸실·훼손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증거에 대한 압수 등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경우

4. 제337조의2에 따른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담당자의 변경 또는 수사부서의 재지정

2. 사건처리 목표기한 및 수사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③ 제1항의 이의제기는 수사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급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급기관의 장은 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심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7조의5(검사에 대한 면담 신

청) 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또는 피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다.

1.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려는 경우

2.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또는 변론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려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검사는 이 조에 따른 면담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

④ 면담의 신청·실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37조의6(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① 피해자등은 사건을 송치받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7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등) ① 피해자등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는 수사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

<신 설>

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통지는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연령, 장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⑥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선정과 참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7조의8(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물」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폭력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준비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3. 그 밖에 재판장이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판장은 제1항의 공판준비기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변호사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공판준비기일 전에 피

<신 설>

해자에 대한 신문사항을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제
출된 신문사항에 관하여 진술
조력인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
견을 들을 수 있고, 신문사항·
신문방법·신문순서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
다.

제337조의9(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법원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5항에 따른 의견진

<신 설>

<신 설>

술을 같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제2항 및 제5항·제6항에
따라 청구한 피해자들의 의견
중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337조의10(피해자 진술의 비공

개)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
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
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
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
여 고지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7조의11(피해자 등의 공판기

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337조의9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결정

<신 설>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불허하거나 일시 유보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 유보하는 결정의 서면에는 그 유보 기간과 재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337조의12(피해자 등의 검사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

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
제자매·변호사는 제266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
(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
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
제 또는 제337조의9에 따른 진
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
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
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
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
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
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 설>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7조의13(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

를 허가할 수 있다. 참가가 허가된 피해자등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이 법에서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살인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및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등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등의 주소지,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해자측참가인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37조의9 제3항·제4항 및 제337조의10을 각각 준용한다.

⑤ 법원은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337조의14(피해자측참가인의 검사 보관 서류등 열람·등사 신청) 제266조의3, 제266조의4 및 제266조의16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에 준용한다.

제337조의15(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신청)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6조는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7조의16(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측참가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리 상황, 피해자측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

<신 설>

측참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측참가인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 측에 위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마주보고 위치한다.

제337조의17(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신문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을

<신 설>

<신 설>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신문할 때
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⑤ 제16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피해자측참가인의 증
인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7조의18(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
측참가인이 피고인신문을 신청
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
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측참가
인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7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
지를 준용한다.

제337조의19(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피해자측
참가인이 범죄사실에 한정하거
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
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
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
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2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
측참가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측참가인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사에게 진술의 요지
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
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
자측참가인에게 제1항의 의견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의견진술의 요지 이외

<신 설>

의 사항을 진술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337조의20(성폭력범죄등 피해
자 신문에 관한 특례) ① 피고
인 또는 변호인은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
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
출된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
하여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
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
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항 및 답변
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동의가 있는 때

2. 피해자의 성적 이력과 관련
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
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
는 결정적인 증거인 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

<u><신 설></u>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생 략) ③ <u>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u> 第417條(同前) <u>檢事 또는 司法警</u>	<u>문사항에 대한 증거조사 및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u> ⑤ <u>피해자는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⑥ <u>재판장은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u> <u>제337조의21(피해자등의 기피신청권) 피해자등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u>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u> 第417條(同前) <u>검사 또는 사법경</u>
---	--

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第428條(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は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60條(執行指揮) ① 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但, 裁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

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關한-----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
-----.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

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 檢事가 指揮한다.

第467條(死刑執行의 參與) ①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 參與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468條(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470條(自由刑執行의 停止)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礙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礙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

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 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 ③ (생략)

第471條(同前)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 각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 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 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檢事が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高等檢찰청 檢事장 또는 지방檢찰청 檢事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471條(同前)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제1항의 지휘-----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

-----지
방공소청에-----

-----.

② -----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 략) 第477條(財産刑等の 執行) ① ~ ④ (생 략)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u>조사</u>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 2항을 <u>준용</u>한다. ⑥ (생 략)	----- ----- -----<u>지방공소청장</u>----- -----. ③ (현행과 같음) 第477條(財産刑等の 執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조치</u>----- -----. -----<u>준용</u>하되 “수사”는 “재판 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 ⑥ (현행과 같음)
--	--